인증서 효력정지 통지서

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2조, 제18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인증서를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효력정지하였음을 통보합니다. - 아 래 -		
일련	번호	
인증사	DN	
인증서	용도	
인증서 서명 전자서명		
인증서 서명 해쉬 일		
효력정	지일시	
효력정	지사유	

유 의 사 항

전자서명법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의 효력회복 신청은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